

제 호

해양수산생명자원 기탁등록보존기관 지정증서

- 기 관 명:
- 주 소:
- 성 명(대표자):
- 업무 범위:

「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·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」 제18조제1항,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 따라 위 기관을 해양수산생명자원 기탁등록보존기관으로 지정합니다.

년 월 일

해양수산부장관

직인